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70549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8구합222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. 18.
판 결 선 고	2019. 2. 2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6. 4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,164,820원과 지방교육세 881,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5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2면 9행, 8면 17행의 각 "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"을 "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2018. 12. 31.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"으로 고친다.

○ 4면 1행의 "제40조의2 제2호"를 "제40조의2 제1항 제2호"로 고친다.

○ 5면 7행의 "않은 것을 보인다"를 "않은 것으로 보인다"로 고친다.

○ 5면 9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(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출장 복명 이후 제2건물 내부시설 등이 변경되었거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펜션용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2건물 내부가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건물에 대하여 2018. 6. 8.자로 발급된 각 건축물대장에 제2건물이 신축된 이후 개축된 내용이 없고,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펜션용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2건물 내부를 정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5

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재[redacted]

판사 [redacted]숙[redacted]

판사 [redacted]승[redacted]